

의안번호	제 98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296 회)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12월 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년 12월 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 근무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공고생략 범위의 구체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인사반영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은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격사유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적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당연퇴직 규정 삭제(안 제9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적용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③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임용권자”를 “도지사”로 하며, “지방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1급 내지 9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따른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2. 비서
3.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초빙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제8조제1항의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을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호 중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제11조의3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 중 “관하여”를 “관하여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 고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 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① <u>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u>	제2조(적용범위) ① <u>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u>
② 생략	② 생략
③ <u>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u>	③ <u>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u>
제4조(임용자격) ① <u>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u>	제4조(임용자격) ① <u>삭제</u>
② <u>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를 그러하지 아니한다.</u>	② <u>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를 그러하지 아니한다.</u>
③ <u>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u>
제5조(임용절차등)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제5조(임용절차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1. 비서관 2. 비서 3.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초빙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u><신 설></u> 제9조(당연퇴직)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u>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u>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u>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4 (생략)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u>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u> <u><삭제></u>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u>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u>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3~4 (생략)

현행	개정안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체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text{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text{12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관련 별표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

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마다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